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1038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룡

변론 종결 2024. 5. 9.

판결 선고 2024. 7. 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1038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2.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9. 9. 체결된 144,419,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배우자인 망 C(2019. 7.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2017. 12. 29. 현금 1,176,455,448원, 2018. 4. 30. 현금 430,000,000원 합계 1,606,455,448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2021. 8. 17.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 생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증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2021. 12. 1. B에게 2017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75,108,240원과 201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96,348,170원을 각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B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경 기준 B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 나.항 기재 각 증여세를 합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증여세	2017. 12. 29.	2021. 12. 1.	2021. 12. 31.	175,108,240	184,301,410
증여세	2018. 4. 30.	2021. 12. 1.	2021. 12. 31.	196,348,170	206,656,440
합계	371,456,410	390,957,850			

라. B은 아들인 피고에게 2021. 7. 8. 20,000,000원, 2021. 7. 12. 20,000,000원, 2021. 7. 13. 10,000,000원, 2021. 9. 9. 144,419,000원 합계 194,419,000원(= 2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144,419,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위 예금의 잔액은 이 사건 증여가 있기 직전인 2021. 7. 7.에는 6,987,615원, 이 사건 증여가 있는 직후인 2021. 9. 9.에는 42,134,187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원고는 B이 2017. 12. 29. 및 2018. 4. 30.에 망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때에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증여세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이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2021. 7.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서야 증여세를 부과·고지받았다는 사정이나 B이 위 증여세 부과를 예상하였는지 여부는 위 증여세 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2021. 7.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조세채권이 당연무효 처분에 기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2021. 7. 15. 망인의 상속세(과세기간 2019. 7. 22.)를 조사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 실제로는 위 사전통지 내용과 달리 2017년, 2018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고, 위 무효의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2021. 7. 15. 망인을 납세자로 한 상속세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2021. 10. 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사실, 위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망인이 B에게 2017. 12. 29. 현금 1,176,455,448원, 2018. 4. 30. 현금 430,000,000원을 각 사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2021. 12. 1. B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할 것을 결정,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항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으로 인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5년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과세가액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 내역을 조사한 것이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2021. 7.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잔액이 6,987,615원인 예금채권이 사실상 유일하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B이 피고에게 2021. 7. 8.부터 2021. 9. 9.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합계 194,419,000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피고는 2021. 6. 12. B과 사이에 B에 대한 부양을 부담부로 하는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21. 7. 8.부터 2021. 9. 9.까지 위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2021. 6. 12.자 증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4호증(증여계약서)은, 위 문서에 기재된 증여가액(200,000,000원), 증여이행일(2021. 8. 30.까지 위 금액의 현금을 인도함) 등이 이 사건 증여의 액수, 시기, 피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취득 시점(2021. 9. 9.)과 들어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B이 2021. 6. 12.자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의사의 판단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망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서로 사업자금, 대출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공동의 채무 변제 내지 사업자금 용도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B은 증여세 결정, 고지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이의나 불복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증여는 2021. 7. 8.부터 2021. 9. 9.까지 약 2개월 사이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처분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은 2021. 7. 15.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있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현금 증여를 계속한 점, ④ B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사실상 B의 유일한 재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1. 6.경 새로운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자금 일부인 200,000,000원을 B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2021. 6. 12. B의 생전 부양을 부담부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당시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해 이 사건 증여를 받고,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고는 B의 아들이고, 2019년~2020년 사이에 B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으므로, B의 재산관계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② 망인이 2019. 7. 22.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인 피고와

B은 2년이 넘도록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세무조사 내지 과세처분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2021. 7. 15. 주거지에서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는 B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 거의 20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받은 사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공동의 채무 변제 내지 사업자금 용도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결과적으로 B이 증여세 결정, 고지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이의나 불복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과 같은 사정 내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모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자진신고하여 원고에게 납부한 증여세 18,364,906원과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원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셈이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였던 것이 아니고, 단지 후발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여계약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과세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증여에 기초하여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은엽

판사김주미

판사박애경